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2730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김광호

변론 종결 2020. 8. 11.

판결 선고 2020. 11. 2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13,556원 및 그 중 49,768,125원에 대하여 2019.6. 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11. 21.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11. 21. ~ 2018. 11. 20.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은 2017. 11. 2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은 2018. 2. 2.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49,768,125원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2. 13. '피고 D은 F에게 속아 원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대표직을 사임했는데, F가 임의로 피고 회사 명의로 E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바, 피고들은 E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E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779,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마. 위 법원은 2018. 9. 19. 피고 회사와 E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이 항소하였다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0758), 2019. 4. 17.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E 대표 G는 피고 D과 F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9. 2. 1. 피고D과 F가 E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 2019. 5. 3. E에 보험금 49,768,125원을 지급하였다.

아.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의하면,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9. 6.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45,431원이고, 2019. 6. 3.부터는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연 9%의 약정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0,013,556원(= 49,768,125원+245,4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 중 보험가입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약관에 해당한다(2020. 6. 25.자 준비서면 제2쪽). 피고 D은 F가 피고 회사를 양도·양수하는데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고, 주계약의 내용은 전혀 몰랐으며, 원고는 대리점물품공급계약을 피고 D에게 제시한바 없다. 원고는 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구상금, 보증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 중 주계약에 관한 부분 등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관계없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 등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대법원 2015.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 중 주계약인 피고 회사와 E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부분 및 보험계약자, 보증내용 등은 모두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보증내용을 정한 개별약정에 불과 할 뿐,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공인전자서명한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E', 보험계약내용 중 보증내용이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주계약내용 중 주계약명이 '대리점물품공급계약서'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D이 직접 서명한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에도 상품명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있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피보험자, 보증내용, 주계약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보증채무의 내용과 주계약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명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을나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 점에 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13,556원 및 그 중 49,768,12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6. 3.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기